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금융협력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주재관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과 재외공관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증원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재관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외교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인력 39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북미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한미안보협력과 및 한미지위협정과의 명칭을 각각 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27.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

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아시아태평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 및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북아시아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동북아시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몽골·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아세안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아세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제1항 중 “북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북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북미국에 북미1과 · 북미2과 · 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제17조제8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미안보협력과장”을 “한미안보협력1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리 · 조정 · 발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9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미지위협정과장”을 “한미안보협력2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위협정 운영 개선”을 “주둔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 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중남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중남미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

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럽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유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제1항 중 “아프리카중동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아프리카중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

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영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20조의2제12항(중전의 제9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제23조제1항 중 “국제법률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국제법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7조제1항 중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을 “양자경제외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9조제1항 중 “14등급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을 “14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

장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11”을 각각 “1,412”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1”을 “272”로 한다.

별표 5 제2호 업무 1)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 으로 하 고,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u>나등급</u> 으로 하 며,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 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u>나등급</u> 으 로 한다.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 ----- ----- <u>가등급</u> ----- ----- ----- ----- ----- ----- ----- ----- -----.
<신 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 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및 정 보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조정기 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u>나등급</u> 으로 하고, 인사기 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⑪ (생 략)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④ (생 략)

⑤ 전략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정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0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인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⑮ (현행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7. ~ 9. (생 략)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삭 제>

7.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으로 하며,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 및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략)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동북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몽골·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장-----

-----.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7조(북미국) ① 북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북미국에 북미1과·북미2과
· 한미안보협력과 및 한미지위
협정과를 둔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세
안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세안국심의관으로 하며, 아세
안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③ 아세안국심의관은 아세안 지
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
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7조(북미국) ① 북미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1조제1항에 따라 북미
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
미국심의관으로 하며, 북미국심
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⑥ 한미안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주한 미국 군대와 관련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⑦ 한미지위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및 지원
2.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 략)

<신 설>

다.

③ 북미국심의관은 북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북미국에 북미1과 · 북미2과 · 한미안보협력1과 및 한미안보협력2과를 둔다.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⑧ 한미안보협력1과장-----
-----.

1. (현행과 같음)
2.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리 · 조정 · 발전-----

3. (현행과 같음)

⑨ 한미안보협력2과장-----
-----.

1.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 지원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2. ----- 주둔 관리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북미지역과의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9조(유럽국) ① 유럽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9조(유럽국) ① 유럽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럽

<신 설>

② ~ ⑦ (생 략)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유럽국심의관으로 하며, 유럽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유럽국심의관은 유럽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재
외동포영사실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
등급으로 하고, 재외동포영사기
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
다.

<신 설>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
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
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

----- 가
등급-----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재
외동포영사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으로 하며,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
전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

<신 설>

<신 설>

② ~ ⑧ (생략)

⑨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신 설>

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급으로 한다.

③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⑫ -----
-----.

1. ~ 7. (현행과 같음)

8.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제법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 설>

② ~ ⑥ (생략)

제27조(양자경 제외 교국) ① 양자경 제외 교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국제법률국심의관으로 하며, 국제법률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법률국심의관은 조약분
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
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
경제외교국장-----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에 따라 양자경제외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으로 하며,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은 양

② ~ ⑥ (생략)

제29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무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
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
등급으로 한다.

<신설>

<신설>

자경제외교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
다.

④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9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

----- 14등급 -----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반
도평화교섭본부장 밑에 두는 보
좌기관은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북
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
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외교

<신 설>

② ~ ⑦ (생략)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2와 같으며, 별표 1의 2의 정원 중 7명(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7퍼센트를 넘지 않는

사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
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
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
· 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③ (생략)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⑤ (생략)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
센트를 넘지 않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411</u>	<u>1,412</u>	+1
외무공무원 계	<u>1,411</u>	<u>1,412</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271</u>	<u>272</u>	+1
영사직공무원			
•	•	•	
•	•	•	